

# 한국의 TPP 참여전략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Korean perspective for joining TPP : Focused on Electronic Commerce

한민정(Min-Chung Han)

미국 뉴욕공과대학교 난징캠퍼스 조교수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한국의 TPP 참여의 전략적 방향 |
| II.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의 확산배경과 현황        | V. 결 론                 |
| III. 우리나라의 FTA협정에 나타난 전자상거래 조문의 특성 | 참고문헌                   |
|                                    | Abstract               |

## 국문초록

4개 국가의 지역 무역협정으로 시작된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은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거대규모의 무역협정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의 꾸준한 요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규모를 감안하여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협정내용은 기존에 체결된 FTA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미 FTA 등의 기존 협정 분야에서 우리에게 유리했던 부분 등을 적극 제시하고 향후 한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 환태평양연대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상거래(e-Commerce), 디지털제품(Digital Goods)

## I. 서론

2013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요원해 보이는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환태평양연대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TPP)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sup>1)</sup>. TPP는 2006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의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혹은 P4)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자유 무역을 위해 만든 P4는 참여 국가들의 작은 경제 규모로 인해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경제 규모 세계 1위의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고 호주, 페루, 베트남 등이 참가하면서 거대 규모의 자유 무역협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2012년 TPP에 참여를 공식화<sup>2)</sup>하면서 총 11개국<sup>3)</sup>이 2013년 2월 현재 TPP에 참여해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미국의 공식적인 참여 요청을 받은 한국은 2013년 연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sup>4)</sup> 일본은 2013년 3월 TPP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sup>5)</sup> 한국과 일본이 참여할 경우 TPP 참여국가는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거대 경제협정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미 미국, 칠레, 싱가포르 등 TPP 참여 국가와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특히 미국은 TPP 협정을 한·미 FTA 조약 내용을 기반<sup>6)</sup>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참여에 큰 무리가 없다. 한국은 그러나 TPP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체결된 FTA와 균형된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기 추진 중이던 한·중 FTA 혹은 한·중·일 FTA와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경제적·안보적 파트너인 미국의 TPP 참여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TPP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sup>8)</sup> 따라서 한국의 TPP참여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이에 대

1)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2월 13일 연두교사에서 미국의 수출 증가 및 직업을 보전하며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TPP 논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 2. 15

<http://www.guardian.co.uk/world/2013/feb/13/state-of-the-union-full-text>

2)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Press-Release, "Canada Joins Trans-Pacific Partnership Round", 2012. 12. 3.

3) 11개국은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다.

4) The Economist, "The gift that goes on giving", 2012. 12. 22, p.11

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Singapore, "Singapore Welcomes Japan'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Press Release, 2013. 3. 15

[http://www.mti.gov.sg/NewsRoom/Documents/MFA-MTI%20Joint%20Press%20Statement%20\\_15%20March%202013.pdf](http://www.mti.gov.sg/NewsRoom/Documents/MFA-MTI%20Joint%20Press%20Statement%20_15%20March%202013.pdf) 2013.3.23

6) 한국은행,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 국제경제정보, 2011. 6. 20, p.3.

7) 빅터 차, "환태평양 FTA시대 한국의 선택은", 중앙일보 2013.1.23, p. 28.

비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sup>9)</sup>은 일본이나 중국의 TPP 참여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일본의 TPP 참여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국가들의 TPP 참여 관련 연구에 치중된 면이 있으며 한국의 TPP 참여에 주목하여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TPP에 참여함을 전제로 하여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협상에서 취할 전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나아가 동 협상결과가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 연구목표로 삼고자 한다.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며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특히 한국 영화와 TV프로그램 등 디지털제품의 수출이 강조되면서 해당 분야에서 한국에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TPP 참여에 현명하게 대비하고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이 TPP 참여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FTA 협정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그 범위가 방대하여 향후 급속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상거래는 기존 P4 협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TPP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서론에 이은 제Ⅱ절에서는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검토한다. 주로 환태평양연대협정이 시작된 배경과 함께 현재의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 이어서 제Ⅲ절에서는 앞서 검토한 P4에서 TPP로의 전환 배경을 토대로 하여 P4에서의 전자상거래 조문과 함께 향후 TPP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의 조문을 함께 분석해본다. 제Ⅳ절에서는 앞 절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TPP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기체결한 FTA 전자상거래의 조문과의 비교를 시도한다. 이 전략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과 향후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하여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TPP 전자상거래 조항을 구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절에서는 전체 내용을

8) 부시 행정부 시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여러 차례 언론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한국은 TPP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의 TPP 참여는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9) 국내 연구에서 황순택(2011), 김형주(2011), 한국은행(2011), 해외농업(2011) 등의 선행 연구들은 일본의 TPP 참가 논의 상황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박한진(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배성준(2012) 등의 연구는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과의 관계 등에 포커스를 두어 분석하고 있다. 해외연구로 Dawson(2012), Elms(2009) 등의 연구는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의 입장에서 각각 TPP의 참여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채택한다. 즉, 연구의 범위로 정한 내용을 다루기 위하여 FTA 협정문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논문과 저서,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 II.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의 확산 배경과 현황

### 1.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P4)의 출발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4개국의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은 아시아와 태평양,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첫 다자간협상으로 P4는 태평양 4개국을 의미하며 지난 2006년 발효되었다. P4는 2002년 APEC 정상회의에서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처음 논의를 시작했고 2005년 제5차 라운드에서부터 브루나이가 참여하였다. P4 협정은 2006년부터 발효되었으며 회원국가간의 관세를 90% 이상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P4 협정 발효시 뉴질랜드의 대 브루나이 수출 관세의 92%가 철폐되었고 뉴질랜드의 대 칠레 수출 관세의 90%가 철폐됐으며 브루나이의 대 뉴질랜드 수출 관세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칠레의 대 뉴질랜드 수출 관세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뉴질랜드와 회원국 간의 모든 관세는 2015년까지 완전 철폐될 예정이며 2001년 발효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간의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간의 관세는 이미 철폐된 상태다.<sup>10)</sup> P4 협정은 서비스 분야에 금지분야 열거방식인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장에서 비관세장벽제거, 식물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이 추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WTO 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1)</sup>

P4의 회원국들은 협정 발효이후 2년 이내에 기존 협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하였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인 2008년 3월 미국이 논의에 참여했으며 2008년 9월 공식적으로 미국이 환태평양연대협정(Trans-Pacific

10) <http://www.mfat.govt.nz/Trade-and-Economic-Relations/2-Trade-Relationships-and-Agreements/Trans-Pacific/2-P4.php> 2013. 2. 4

11) <http://www.unescap.org/tid/artnet/mtg/Deborah%20Elms.pdf> 2013. 2. 6

Partnership)에 참여할 것을 공표하였다.<sup>12)</sup> 이후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를 선언하였다.<sup>13)</sup> P4 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TPP에서 전자상거래를 협정에 포함시켜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2.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TPP의 확대

미국이 2008년 TPP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2010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1차 라운드를 시작으로 TPP 참여국들은 지난 2012년 1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제15차 라운드까지 TPP 협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2013년에는 3월 4일에서 1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16차 라운드가 진행됐다.

TPP협상 참가국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정 타결을 목표로 24개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참여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기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진행이 예정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당초 2011년 타결을 목표로 하던 TPP 협상은 2012년내 완전 타결로 일정을 늦추었지만 2013년까지 협상 논의가 이어졌다.

제2차 임기를 맞이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등의 주요 아시아 국가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미국이 TPP의 세력 확장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서 침체된 경기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TPP의 적극적인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sup>14)</sup> 한편으로는 중국이 빠르게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은 TPP에 중국의 참여를 궁극적으로는 희망하고 있으며 TPP가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TPP를 통해서 미국이 통상과 투자분야 외에 국내 경제정책과 법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또한 미국이 그간 공을 들여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가 아시아태평양

12) 미국의 참여를 모든 P4 참여국이 환영한 것은 아니다. 칠레와 브루나이 등은 미국 측이 노동, 환경 분야 등에서 까다로운 조약을 제시할 것을 우려하였다.

13) <http://www.mfat.govt.nz/Trade-and-Economic-Relations/2-Trade-Relationships-and-Agreements/Trans-Pacific/index.php> 2013. 2. 4

14)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TPPFAQ.pdf> 2013. 2. 5

15) Xu Mingqi, "China-Korea FTA and Regional Cooperation", MBN Forum 2012, 2012. 2. 28

지역의 시장 통합 및 무역 자유화 등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안으로서의 TPP를 선택했다는 분석<sup>16)</sup>도 제기되고 있다. TPP에 앞서 미국은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FTA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을 제안하였으나 단기간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TPP로 방향을 선회<sup>17)</sup>하였다.

### Ⅲ. 우리나라의 FTA협정에 나타난 전자상거래 조문의 특성

#### 1. P4 협정에서의 전자상거래

P4 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논의하는 별도의 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관세 절차를 다루는 제 5장에서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장에서 관세 행정 기관은 비즈니스 거래를 지원하는 무역관련 기관과 관세 행정 기관 사이의 전자적 환경(electronic environment)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이 없는 무역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 행정 기관은 APEC과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개발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관에 있어서 선적서류를 전자적 방법(electronic means)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제11장 정부조달에서는 각 조달기관들이 필요한 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관심 있는 모든 대상자가 차별 없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무료로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단일 전자 창구(single electronic point of access)<sup>18)</sup>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제11장 21항 정부조달에서 전자적 소통의 권유(usag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에서 조달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자들의 상업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통신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하며 접속을 위한 단일 전자 포털(single electronic portal for access)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기하였다. 또 입찰 문서 접수 등에서 전자적 수단(electronic means)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이는 P4 참여국들이 정부의 단일 전자적 창구인 싱글윈도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종이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적 서류의 이용을 권장하는 한편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6) 김형주, “일본의 TPP 참가 선언 동아시아 FTA 환경의 새 변수”, LG Business Insight, 2011. 11. 23, p.31

17) 한국은행,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 국제경제정보, 2011. 6. 20, p.2

18) 전자정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흔히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라고 불린다.

그러나 P4 협정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단독의 장으로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이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정의나 언급이 없었으며 종이 없는 무역에서도 전자적 서류가 종이 서류와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명시적인 표기가 없었다.

## 2. TPP 협정에서의 전자상거래

TPP협정과 관련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협정문의 각 장이나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없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의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관련 초안이 유출된 적은 있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초안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PP 논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TPP 협정 개요와 기타 공개문건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공개된 TPP 협정 개요<sup>19)</sup>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포괄적 이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참여 국가들은 협정문에서 전자상거래 논의내용이 소비자와 기업이 갖고 있는 장애물을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경제가 실행 가능하도록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협상 참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관세 부과(customs dut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와 전자적 거래의 인증(authentic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에 대하여 고무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고 정보의 흐름(information flows)과 디지털 제품의 처리(treatment of digital products)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명시하였다. 가장 최근 열린 16차 싱가포르 TPP 논의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이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공식 자료<sup>20)</sup>에서 밝혔다.

공개된 부분의 내용은 제한적이지만 P4 협정과 비교해서 전자상거래가 단독 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며 디지털 제품과 이에 부과되는 관세,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전자 인증 등의 내용이 거론된 점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P4 협정에서 포함되었던 종이없는 무역이나 단일전자창구(싱글 윈도우)에 대한 언급이 전자상거래 부분이나 관세 조항에서 없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에서 발표된 의회 설명 자료<sup>21)</sup>에서 미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19)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fact-sheets/2011/november/outlines-trans-pacific-partnership-agreement> 2013. 2. 7. 미국은 논의가 완료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사항이나 세부 내용 등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20) [http://www.fta.gov.sg/press\\_release/MTI%20Press%20Release\\_End%20of%20TPP%20Round%2016%20in%20Singapore001.pdf](http://www.fta.gov.sg/press_release/MTI%20Press%20Release_End%20of%20TPP%20Round%2016%20in%20Singapore001.pdf) 2013. 3. 24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Intensify in Singapore", Press Release, 2013. 3. 13

인해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체결한 KORUS FTA를 언급하며 전자상거래의 별도 조항이 있다고 명기하였다. 이 조항들은 전자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도 비전자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디지털 제품은 전달 매체가 전자적이거나 혹은 비전자적(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든지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TPP 논의에서 미국의 제시안은 국경간 정보흐름(Cross-Border Flows of Data)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일 채택된다면 인터넷 검열에 대한 회원국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첨단 기술 단체들은 규제 없는 국경간 정보흐름을 지지하였으며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촉진을 위하여 개별 지역에 데이터 저장장치나 서버를 보유하자는 요구에는 반대를 표하였다. 이들 기술 단체들은 기업들이 이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규제없는 국경간 정보흐름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TPP 다른 참여 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는 지역 내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호주는 사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국경간 정보흐름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상업적 혹은 검열의 이유로 특정 콘텐츠 등을 제한하고 있다.

위의 자료에서 미국은 한국과 맺었던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조항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TPP에서도 적용하기를 희망하였다.

### 3. 한·미 FTA 협정에서의 전자상거래

미국은 2003년 싱가포르와 맺은 FTA에서 전자상거래를 독립된 장으로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점차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을 확대하였다. 2012년 발효된 한국과의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관세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제 15장 전자상거래<sup>22)</sup>에서 양국은 “전달 매체가 원산지 상품인 경우 이에 고정된 디지털 제품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관세, 수수료,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필수적인 신용과 신뢰를 높

21) <http://www.fas.org/sgp/crs/row/R42694.pdf> 2013. 2. 7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2012. 11. 21

2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제 15장 전자상거래



이기 위한 전자서명과 관련하여서 “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적절한 전자서명과 인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만큼 “당사국의 국가소비자 보호 집행기관은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시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에 대하여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대국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고 당사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종이 없는 무역을 적극 권장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며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유한다.

국경간 정보 흐름에 관하여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제15장에서는 디지털 제품의 정의를 밝혔는데 디지털제품이라 함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이라고 규정하였다.

한·미 FTA를 통하여 한국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쟁점에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우선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원칙<sup>23)</sup>을 채택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라운드를 통해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관행 유지를 연장하는 것에 동의<sup>24)</sup>하였으나 영구적 무관세의 입장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향후 WTO의 결정에 따라 재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관세의 영구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의견이 달랐으나 이후 한국이 무관세 관행을 이어와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용하여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에 동의하였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sup>25)</sup> 이는 한

23)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상거래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디지털 물품에 대한 영구 무관세를 주장하지만 EU 등은 당분간의 무관세 관행에는 동의하나 영구적 무관세에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체결 이전에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영구무관세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오성, “전자상거래 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2004. 4. 25. pp. 281~282.

24)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bey4\\_e.ht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bey4_e.htm) 2013. 2. 11

25) 한미 FTA 제15.4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싱 FTA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다.

전자서명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은 호주와 FTA<sup>26)</sup>를 체결하면서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도 틀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상황을 수용하였다.<sup>27)</sup>

#### 4.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서의 전자상거래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협정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이 전자매체, 전자적 전송과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양 국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여 추후 WTO에서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송 콘텐츠 등의 한·싱가포르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 적용은 제외하여서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의 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분에서는 “디지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 관세 …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였다.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WTO가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할 때까지”라는 문구의 삽입을 주장하였으나 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굳이 WTO의 진전사항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서 사실상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구 무관세화에 동의하는 입장<sup>28)</sup>을 견지하였다.

26) 미국·호주 FTA Article 16. 5: Authentication and Digital Certificates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uploads/agreements/fta/australia/asset\\_upload\\_file508\\_5156.pdf](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uploads/agreements/fta/australia/asset_upload_file508_5156.pdf) 2012. 2. 11

27) 윤창인, FTA 협상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2, pp.54-55.

28) 강신원·이한영,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8권 특별호,

중계무역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경우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디지털 콘텐츠의 1차적 개발이 제3국이고 단순히 생산, 유통 등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임승차(*free ride*)의 소지가 있으므로 협정국 제품만을 역내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종적 한·싱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규정은 제외되었다.

한·싱 FTA 전자상거래 협정은 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과 비교해서는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도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종이없는 전자무역과 국경간 정보 흐름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 5. 한·페루 FTA 협정에서의 전자상거래

지난 2011년 발효된 한·페루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은 제 14장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항들을 다루고 있다. 전자상거래 협정문에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밝혀 추후 WTO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의 적용 여지를 남겨두었다.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디지털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라는 관행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을 담은 전달 매체에 대한 관세의 언급은 해당 조항에서 없었다. 이를 통하여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의가 한·싱 FTA, 한·미 FTA와 일부분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페루보다 먼저 체결된 한·싱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이란 “전달 매체에 고정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제품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한·미 FTA에서도 “디지털제품이라 함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페루 FTA에서는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 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전자적 매체에 담겨진 디지털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자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고만 규정하였다. 이는 소비자보호 관련 조

향이 없었던 한·싱 FTA에 비해서는 확대된 조항이지만 양 당사국간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은 …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에 대처하여 …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 기관과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 한·미 FTA에 비해서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항이 제한적이라고 보인다.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과 관련하여서는 한·페루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인증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정부가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서만 언급함으로써 한국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정부 권유의 인증서에 힘을 실어주었다. 제 14.8조에서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발급한 디지털 인증서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동의하였다.

중이없는 무역과 관련해서는 한·싱 FTA에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과 달리 한·페루 FTA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이 그대로 한·미 FTA에서도 내용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한·페루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에서는 한·미 FTA에는 없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존재한다.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의 채택 또는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경간 정보 흐름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 IV. 한국의 TPP 참여의 전략적 방향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입장은 유보·관망적인 자세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TPP에 참여를 할지를 밝힌 적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적은 있다. 한국이 TPP에 대하여 유보적인 것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싱가포르, 미국, 칠레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호주, 캐나다 등과는 FTA 협상이 진행 중으로 쌍방 FT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TPP의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들이 언급했듯이 TPP를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보는 시선 또한 한국의 TPP 가입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뿐만 아닌 안보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끊임없는 TPP 가입 요청을 간과하기는 어렵고 특히 TPP가 다른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모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전이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참여를 통하여 협정 제정 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도권과 함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미국은 과거에 체결한 FTA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TPP 협정문을 만들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한·미 FTA를 체결, 발효한 한국은 다른 참여국가보다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유리하다. TPP 참여 국가들은 추후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문호를 개방하고 협상 타결 이후에도 참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문을 변경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서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도 소프트웨어, 방송 콘텐츠, 종이없는 무역 등에서 여타 TPP 참여국에 비해서는 선도적 위치에 있으므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을 한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된다면 향후 해당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1.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은 TPP 개요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관세 부과에 대하여 참여국가간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서 다루어진 디지털 제품의 관세 부과 내용을 감안하면 TPP에서도 디지털 제품은 무관세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영구 무관세를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EU 등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TPP 논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디지털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하여 미국과 유사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싱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sup>29)</sup>에서 당사국은 전자적 거래로 인한 디지털 제품의 수출, 수입에 대하여 관세, 수수료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미·칠레 FTA<sup>30)</sup>에서는 양 당사국 어느 곳도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미·호주 FTA<sup>31)</sup>에서는 디지털 제품이 전달 매체에 담겨있던지 아니면 전자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 수수료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미·페루 TPA(Trade Promotion Agreement)<sup>32)</sup>에서는 미·싱 FTA와 유사하게 당사국은 전자적 거래로 인한 디지털 제품의 수출, 수입에 대하여 관세, 수수료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디지털 제품을 담고 있는 전달 매체의 관세 부과에 대하여는 조금씩 다른 내용이 보이는

29)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singapore-fta/final-text> Chapter 14 2013. 2. 17

30)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chile-fta/final-text> Chapter 15. 2013. 2. 17

31)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australian-fta/final-text> Chapter 16 2013. 2. 17

32)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peru-tpa/final-text> Chapter 15 2013. 2. 17

데 미·싱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을 담고 있는 전달 매체의 가격만을 산정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미·칠레 FTA에서는 아예 전달 매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미·호주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이 전달 매체에 담겨 있는 경우에도 무관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범위를 확대하였다. 미·페루 FTA에서는 미·싱 FTA 조항과 유사하게 전달 매체의 가격을 산정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의 과거 FTA 협정에서는 한·싱 FTA에서 디지털 제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관세 및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으며 디지털 제품이 포함된 전달 매체의 경우에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미 FTA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전달 매체에 포함된 경우의 사례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통상부<sup>33)</sup>에 따르면 전달매체(CD 등)에 담겨있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한·페루 FTA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와 수수료, 부과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전달 매체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과거 FTA 체결에서의 내용 변화와 의회에서의 설명 자료 등에 기반을 두어 볼 때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 원칙이 TPP에서는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제품이 전달 매체에 포함된 경우에도 전달 매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사실상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 관행에 따라왔으며 한·싱 FTA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제품이 포함된 전달매체의 관세 부과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WTO는 전달매체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각 국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난 한·미 FTA를 통하여 전달매체에 담긴 디지털 제품도 비관세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TPP의 디지털 제품 무관세 원칙의 확정이 한국의 상황에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 2. 시청각 서비스의 배제 문제

한국이 TPP 참여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이 TPP 참여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비차별 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이 TPP 참여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조항에서는 비차별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범위 설명이 미·싱 FTA를 제외하

33) [http://www.fta.go.kr/korus/section/product\\_view.asp](http://www.fta.go.kr/korus/section/product_view.asp) 2013. 2. 18

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싱 FTA에서는 제14.3조 6항에서 “이 장은 청각적, 시각적 또는 그 모두의 수신을 위하여 콘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편성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의 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한국이 TPP 참여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조항에서는 방송 등의 시청각 서비스는 해당 분야의 공공성과 영향력 등을 감안하며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한·미 FTA와 한·싱 FTA에 포함되었다. 특히 미·싱 FTA 전자상거래 조항과 한·미 FTA 전자상거래 조항에서 방송 등의 소비자가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이 없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제외 조항은 영문 조항이 동일<sup>34)</sup>하다.

미·싱 FTA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첫 사례였으나 이후 체결된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조항에서 방송 등이 제외된다는 조항이 빠졌다. 한국 역시 한·페루 FTA에서 방송 등의 시청각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는 싱가포르나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페루에서의 방송 콘텐츠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또 페루의 인터넷 보급률이나 전자상거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장과 같이 구체적인 의무가 포함된 협정문을 작성하기 보다는 양자 간 협력과 조화를 강조한 협정문을 만든 것<sup>35)</sup>으로 보인다. 반면 콘텐츠 강국인 미국과는 향후 산업적·문화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상에서 시청각 서비스에는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TPP에서 미국은 시청각 서비스의 배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한·미 FTA와 한·싱 FTA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이 포함된 TPP 무역협정에서는 VOD서비스<sup>36)</sup>와 같이 성격이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은 서비스 등을 감안하여 개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4)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measure affecting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a series of text, video, sound recordings, and other products scheduled by a content provider for aural and/or visual reception, and for which the content consumer has no choice over the scheduling of the series.

35) 권현호, “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상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2010, p.91

36) VOD 서비스는 Video On Demand로 소비자가 원할 때 선택권을 가지고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선택권이 없는 방송과는 다르지만 실시간 온라인 방송 등과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  
윤창인, “전게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2, p. 54

### 3. 전자서명과 인증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서명과 인증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하는 거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TPP에서 전자서명과 인증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인증기관과 인증서의 선택 부분이다.

미국은 해외 대부분의 전자서명 시장을 장악한 베리사인 등의 전자인증 및 서명 관련 기업의 영향력이 크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융 거래 등의 경우에는 5곳의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정보인증 및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는 전자거래 당사자가 적정한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전자금융거래와 같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정분야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한 전자인증수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기존 FTA 전자서명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전자서명이나 인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에 일반 인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호주 FTA와 호주·싱 FTA의 전자서명 조항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선택한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발급한 디지털 인증서를 인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한 반면 미·싱 FTA와 미·칠레 FTA에서는 전자서명과 관련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sup>37)</sup>

다른 쪽 당사국이 발급한 디지털 인증서를 인정하는 것은 비즈니스 등에 있어서 전자서명이나 인증을 상호 인정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돕자는 뜻이나 한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분야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분야에서는 지정된 기관에 의한 인증서만을 사용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에는 유리할 것이다.

37) [http://www.eab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AJRC\\_Dece\\_2005.pdf](http://www.eab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AJRC_Dece_2005.pdf) 2012. 2. 18

Philippa Dee, "The Australia - US Free trade Agreement: The assessment", Pacific Economic Paper No. 345, pp. 126~127.



#### 4. 국경간 정보 흐름

미국 의회에서 설명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TPP 회의에서 제시한 협정 안에서 참여 국가들이 인터넷상에서 국경간 정보 흐름을 막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일 미국이 제한한 조항의 내용이 그대로 TPP 협상에서 채택이 된다면 TPP 참여국가들이 인터넷 검열을 할 수 있는 여지에 영향을 주게 될 것<sup>38)</sup>이다. 미국의 첨단 기술 단체들은 제한없는 국경간 정보 흐름을 지지했고 각 당사국이 데이터 저장장치나 서버를 특정 지역에 보유하라는 요구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촉진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술 단체들은 사기업들이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한없는 국경간 정보 흐름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향해온 미국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TPP 참여 국가들에서 미국의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흐름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될지는 미지수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당 지역내에 서버나 데이터 저장장치를 보유하지 못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으며 호주는 이보다 앞서 나아가 사기업의 개인정보보호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 당사국에 국경간 정보흐름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은 특정 콘텐츠 등을 제한하는 인터넷 검열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에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한·페루 FTA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경 간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TPP 협정의 내용이 단순히 국경 간 정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 미국의 정보기술단체들이 희망하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을 위하여 서버나 데이터 저장장치를 어느 지역에 놓느냐와 같은 문제까지 접근된다면 한국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sup>39)</sup>은 향후의 진행 방향으로 인식은 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관련된

38)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2012. 11. 21, pp. 43~44.

39)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클라우드로 표현되는 인터넷상의 서버에서 데이터 저장,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50825&mobile&categoryId=200000756>

법령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법안 내용이 개별 기업의 사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외국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한다<sup>40)</sup>고 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으로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가 고장나도 정보는 인터넷상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서 손실이 없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 아마존과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켜 고객사의 서비스가 중단<sup>41)</sup>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경간 정보 흐름의 자유화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대형 업체<sup>42)</sup>라는 점도 TPP 참여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적극적 국경간 정보 흐름에 따라가기보다는 호주 등이 제안한 절충방안이 참여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베트남 등의 인터넷 검열 국가로서는 미국의 급진적 국경 정보 흐름 자유화는 따라가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부의 법령이 확정되고 국가정보기관<sup>43)</sup> 등의 입장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는 각 당사국이 자율권을 갖는 절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 V. 결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경제 분야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에 나섰으며 일본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 교섭에 참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sup>44)</sup>하였다. 이미 11개국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은 단순히 11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

40) “2012년 클라우드 업계 어땠나”, 주간 클라우드 동향, 디지털 테일러, 2012. 12. 30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9360](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9360) 2013. 2. 18

41) 유효정, “아마존·애플 클라우드 장애 잇따라”, 전자신문, 2012. 12. 26  
[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697625\\_1496.html](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697625_1496.html) 2013. 2. 18

42) Economist, “Come on, TTIP”, 2013. 2. 16.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71890-good-idea-state-union-address-business-should-rush-support-come-ttip>

이 기사에서는 미국과 유럽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야기하였으나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 흐름의 내용은 TPP와 유사한 내용으로 기사에서 언급되었다.

43) 한국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유출 등을 우려하여 정부기관이나 국공립기관에 대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4) TPP 참여국가들은 2013년 3월 15일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의 TPP 참여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일부 TPP 교섭 참가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FTA관련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우리의 입장을 TPP 협정 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상 종료 이전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TPP 협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비공개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으나 TPP 주도국가인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의 협정 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가 있다. 특히 TPP의 전자상거래 부분은 한·미 FTA와 미·호주 FTA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TPP의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영구 비관세 원칙을 미국이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관세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이 전달 매체에 담긴 경우의 관세 부과에 대하여는 각 국가가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각 서비스의 비차별원칙 배제 부분은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소비자가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는 시청각 서비스, 방송 등에 대하여는 내국인대우나 최혜국대우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한·미 FTA와 한·싱 FTA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방송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접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콘텐츠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는 미국은 TPP 협상에서 시청각 서비스의 배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주가 제시한 것과 유사하게 시청각 서비스는 비차별원칙에서 배제하고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전자인증의 경우 미국은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은 전자서명법에서 금융 거래 등의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기존 FTA 전자서명 관련 조항도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전자서명이나 인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에 일반 인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한·미 FTA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같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정분야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한 전자인증수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TPP의 참가 국가가 확정되지 않았고 협정 초안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제시하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 또 TPP 협정과 참여 국가들의 기체결한 FTA와의 공존 문제도 미국은 TPP가 기존 FTA에 우선할 것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국가들간에 견해 차이가 현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원산지 문제도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디지털제품에도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확정되고 구체안이 제시되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 참 고 문 헌

- 강신원·이한영,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8권 특별호, 2005.
- 권오성, “전자상거래 관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제와 대응”,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 권현호, “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상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2010.
- 김형주, “일본의 TPP 참가 선언 동아시아 FTA 환경의 새 변수”, 「LG Business Insight」, 2011. 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PP 발전동향과 중국의 입장”,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2. 5. 3
- 배성준, “TPP에 대한 미-중 전략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무역통상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2.
- 빅터 차, “환태평양 FTA 시대 한국의 선택은”, 중앙일보, 2013. 1. 23
- 윤창인, 「FTA 협상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한국은행,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 국제경제정보, 2011
- 황순택, “일본의 FTA 정책과 TPP 참여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11. 12. 16
- Dawson. Laura, “Can Canada jo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y just wanting it is not enough”, C.D.Howie Institute, Commentary No. 340
- Elms. Deborah, “From the P4 to the TPP: Explaining Expansion Interests in the Asia Pacific”, Asia-Pacific Trade Economists’ Conference Trade-Led Growth in Times of Crisis, 2009. 11. 2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Press Release, “Canada joins Trans-Pacific Partnership Round” 2012. 12. 3

Xu Mingqi, “China-Korea FTA and Regional Cooperation”, MBN Forum 2012

The Economist, “The gift that goes on giving”, 2012. 12. 22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사이트 (www.mfat.govt.nz)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사이트 (www.mti.gov.sg)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사이트 (www.ustr.gov/tpp)

버락 오바마 연두교서 전문

(<http://www.guardian.co.uk/world/2013/feb/13/state-of-the-union-full-text> 2013. 2. 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전문

([http://www.fta.go.kr/korus/pds/kor\\_us\\_list.html](http://www.fta.go.kr/korus/pds/kor_us_list.html))

대한민국 정부과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전문

([http://www.fta.go.kr/pds/fta\\_korea/singapore/kor/all\\_view.pdf](http://www.fta.go.kr/pds/fta_korea/singapore/kor/all_view.pdf))

대한민국과 페루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전문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peru/kor.pdf](http://www.fta.go.kr/new/pds/fta_korea/peru/kor.pdf))

미국의 FTA 협정문 전문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 ABSTRACT

### Korean perspective for joining TPP : Focused on Electronic Commerce

Min-Chung Han\*

Trans-Pacific Partnership started as a small scale 4 countries regional trade agreement. It became a grand free trade agreement when the United States announced its participation and Japan considers to join. Korea still hasn't decided the stance however, consider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act of TPP, it looks like that Korea is going to join TPP. US led the TPP agreement is expected to be made based on the previous FTA agreements of the US. In the promising E-Commerce part, it is likely that the e-commerce leading US would suggest favorable agreement. If Korea joins the TPP, it's necessary to suggest what Korea wants and needs based on the previous KORUS FTA to promote Korean e-commerce for the future.

**Key Words** : Trans Pacific Partnership(TPP), Free Trade Agreement(FTA), e-Commerce, Digital Goods

---

\* Assistant Professor,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Nanjing Campus